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영주권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는 것이다.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21세 이상 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만 했다면 지금의 불법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외는 K 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서 초청을 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이다.



**이동찬**

이민 변호사

사기혐의 때문에 면제를 받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말고 245i 불법체류 구제법안을 통

류하고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끔 1990년도에 가족이민 신청을 했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 진행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가족초청 청원서만 이민국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245i 혜택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2년에 가족초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었지만 부모님께서 미국에 이민을 오지 않아 가족초청 청원서가 죽은 고객이 있었다. 그는 2005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했고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245i 조항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 체류신분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시민권자와 재혼을 했을 시에 그 전 결혼을 통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 또한 21세가 되기 전 현재 불법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자인 양아버지 또는 양어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그 자녀 또한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이민법을 통하여 인정 받는 것이다.

또한 간혹 영주권을 받으려고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다.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여 자녀만 시민권이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자녀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 이후 시민권을 획득해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도 흔하다. 가족 중 한명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되어서 해외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어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도 번번이 있는데 이민법은 사기결혼을 엄하게 벌한다. 추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또한 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를 했거나 불법으로 취업을 했거나 밀입국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신청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노동허가서 신청서 등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어야한다. 다만 서류가 접수되었을 당시 승인날 수 있어야 하고 1998년 1월 15일 이후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245i 조항은 관대하게 적용된다. 서류가 접수되었을 당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원서는 오래전 접수됐지만 영주권의 문호가 빨리 열리지 않아 자녀가 21세가 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21세가 넘어 가족과 함께 영주권은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현재 불법으로 미국에 체

필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현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가끔 245i 조항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유학생 신분이 죽게 되면 불법체류를 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므로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하면 거절된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I-94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보는데 유학생 I-94 신분증에는 만기기간 없다. 그러므로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의 불법체류에 대한 별도의 판결이 없으면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213)291-9980